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내 지역 서비스 항목 신설〉
■ 조인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749호)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조인철의원 등 19인
2. 발의연월일 : 2026. 3. 25.
3. 회부연월일 : 2026. 3.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자에게 일정 한도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답례품의 종류가 지역특산품, 지역사랑상품권 등 ‘물품’에 한정되어 있어, 공공시설·숙박시설 등 이용권이나 관련 서비스를 직접 기부자에게 답례로 제공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답례품의 범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 공공시설·숙박시설 등 이용권 및 관련 서비스를 명시함으로써, 라이프 스타일과 연계한 답례품을 설계하여 지역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9조 제2항제2호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답례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 공공시설·숙박시설 등 이용권 및 관련 서비스를 고향사랑기부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2호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9조(답례품의 제공) ① (생략)	제9조(답례품의 제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②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u><신설></u>	<u>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 공공시설·민간시설·숙박시설·교육시설·체험시설 이용권 또는 관련 서비스</u>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u>제2항제2호에</u> 해당하지 아니	3. <u>제2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의</u>

하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 4. (생략)	2에----- 4. (현행과 같음)
--------------------------	------------------------

‘고향사랑 기부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지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취득하는 금전¹⁾으로서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금의 형태를 통하여²⁾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부금을 의미함³⁾.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향사랑 기부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지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취득하는 금전을 말한다.

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이하 “고향사랑기금”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제3항에 따른 모집·운용 비용 및 제4항에 따른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 또는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경우 해당 사업 또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③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금의 일부(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고향사랑기금의 일부를 제9조에 따른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와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고향사랑e음, 위기브 등의 민간플랫폼을 활용하여 기부 및 답례품 신청을 온라인 절차를 활용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⁴⁾ 및 답례품 제공⁵⁾을 통하여 개인의 자발적인 지방자치단체로의 기부를 유인하고 있음.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부자에게 지급하는 답례품의 종류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 공공시설·민간시설 등의 이용권 또는 관련 서비스를 명시하여 지역 내 생활과 관련된 답례품 설

4)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제1호를 따르되,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1.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 $\times$ 110분의 100
2.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times$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times$ 100분의 40
3.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times$ 110분의 100 + 10만원 $\times$ 100분의 40 + (고향사랑 기부금 - 20만원) $\times$ 100분의 1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부한 경우에는 100분의 30)

②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받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하며, 사업자인 거주자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이 법에 따라 세액공제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한 고향사랑 기부금과 제2항의 한도를 초과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또는 같은 법 제59조의4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답례품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역특산품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2.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3. 그 밖에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것

③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현금
2. 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류
3. 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계를 통한 지역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현행 법령체계 하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에 관하여 입법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고 이때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답례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것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⁶⁾.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는 고향사랑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으로 서울특별시의 관광진흥에 기여하는 물품, 서비스 및 유가증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고⁷⁾, 대전광역시도 지역의 경제 활성화

6)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답례품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역특산물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2.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3. 그 밖에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것

③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현금
2. 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류
3. 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조(답례품의 종류) ①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창업 및 육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의 물품, 서비스 및 유가증권

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고향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음8).

구체적으로, 경기도는 조례에 근거하여 2023년 ‘안성 남사당 상설공연·승마 체험’ 등 서비스 상품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선정하여 등록하였고9), 울산광역시는 2023년부터 대왕암공원에 위치한 캠핑장에

2. 시의 관광진흥에 기여하는 물품, 서비스 및 유가증권

3. 그 밖에 시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물품, 서비스 및 유가증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우선하여 답례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시에서 육성하는 산업분야의 물품, 서비스 및 유가증권

2. 서울사랑상품권, 전통시장상품권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유가증권

3. 여성기업 및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경제기업, 희망기업 제품

4. 시에서 생산한 농·특산물 및 공예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서비스 및 유가증권

8) 「대전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관할구역에서 생산·채취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해당 관할구역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제조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고향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2.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자가 생산한 농산물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8. 대전광역시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9. 농수산물가공품 등의 제조품일 경우 관할구역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품목

10. 대전광역시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1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 <개정 2024.5.17.>

12. 대전광역시 지역사랑 상품권, 관광 입장권 등 대전광역시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13. 그 밖에 시장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운영하는 각종 서비스 상품

9) 경기도 보도자료, 「경기도, 농산물꾸러미 등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8곳 추가 선정」

서 사용할 수 있는 ‘대왕암공원 카라반 선착순 할인권’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선정하여 등록 후 제공하고 있음.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하여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생활 서비스와 관련된 상품의 제공 범위를 포괄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현행 법체계를 유지할 것인지, 관련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격하여 제도의 통일성을 기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입법 정책적 판단이 요구될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현행법 해석상 물품 외의 관광서비스 상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어 법 개정의 필요성이 낮고, 공공시설·숙박시설 이용권 등 관련 서비스를 법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현행 규정에 비해 답례품 범위를 축소 해석하도록 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37

(2023.7.7.)

참고 1

고향사랑기부제 개요

□ 주요 내용

- (제도취지)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기부주체) 개인(법인 불가)
- (기부대상) 주민등록지(국내거소신고지) 외 전국 모든 지방정부
- (기부 상한액) 1인당 연간 2,000만 원 ※ 기부금의 30%이내 답례품 제공
- (세액공제)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초과}~20만원^{이하} 44%, 20만원 초과 16.5%
 ※ 특별재난지역은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부 시 10만 원 초과분 33% 공제
 ※ '26년부터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적용(16.5% → 44%)

□ 기부 방법

- (온라인) 고향사랑e음과 민간플랫폼*에서 기부 및 답례품 신청
 *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액티부키, 웰로, 위기브, 체리
- (오프라인) 전국 5,900여 개 농협은행·농축협지점 창구에서 기부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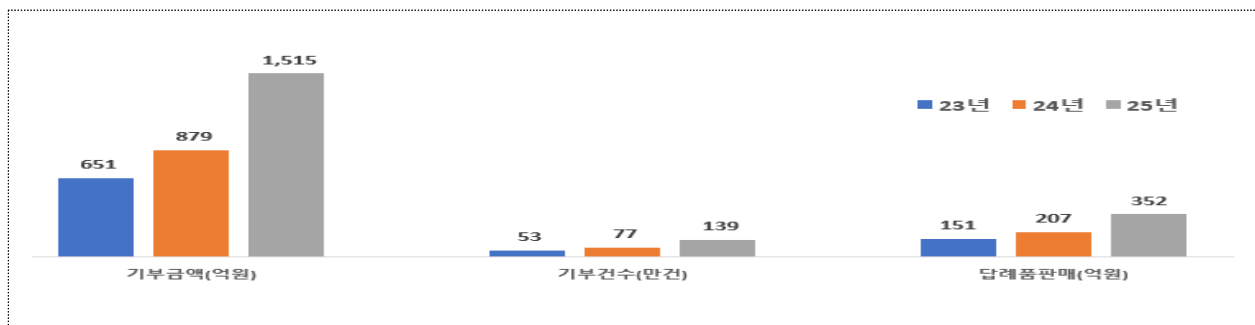
구분	합계	온라인			오프라인 (농협창구)
		소계	고향사랑e음	민간플랫폼*	
건수	1,391,850	1,351,129	943,377	407,752	40,721
비율	100.0%	97.1%	67.8%	29.3%	2.9%
금액(억 원)	1514.5	1416.0	1017.0	399.0	98.6
비율	100.0%	93.5%	67.1%	26.4%	6.5%

* 위기브 23.5만건(16.9%), 웰로 14만건(10.2%) / 국민(1.3만건), 농협(0.8만건) 順

□ 기부 현황

- (모금 실적) 650억^{'23} → 879 억^{'24} → 1,515 억 원^{'25}으로 제도 시행 3년만에 1,500억 원 돌파

< 연도별 기부금액 및 기부건수 >



- (지역경제 기여) 지방정부에서 제공하는 답례품은 총 352억 원 판매되어 전년 대비 70% 증가

참고 2

울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카라반 할인권) 개요

□ 주요 내용

- (대상) 카라반 17번(캠핑카형), 18번(캐빈형) 2개동
- (예약방법) 답례품 선택 후 예약 담당자 전화(선착순 예약)
- (이용방법) 기부자 휴대폰으로 이미지 할인권 전송 후 당일 신분증, 등본지참(울산시민 20% 할인) 및 할인권 제출 후 차액 현장 결제
- (정산) 매달 초 전월 할인권 사용내역 확인(공원녹지과) 후 정산

	평일(일, 월, 화, 수, 목)	주말(금, 토) 공휴일 전날	성수기(7월~8월)
기본요금	110,000원	130,000원	150,000원
울산시민 (20% 할인)	88,000원	104,000원	120,000원
할인권(3만원)	58,000원	74,000원	90,000원

※ 2023. 1월 최초등록 / 2025년 기준 288건 발급



캠핑카형



캐빈형